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25일,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 의원)

농어촌은 현재 전국 출산율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과거 농가 수 및 농가인구 추이에 비춰 볼 때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또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이후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 등 농업 생산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후계농어업인 역시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농어촌 현실에 적응하지 힘들. 따라서 농촌 지역사회의 리더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첫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0년 5월 19일 제정·공포되어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현재 이 법을 근거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설립되어 후계농업인의 미래 농어업 생산력 제고와 후계농업인 스스로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12조제1항은 이를 ‘운영경비¹⁾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²⁾.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재정 여력이 부족한 후계농어업인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지원 내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1) 운영비 :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경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상남도 연합회의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음(2024.8.13.,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장 인건비 지원근거 마련 건의”)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등을 지원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7억 7,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는 의견임.

둘째, 개정안 제12조제2항은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기부나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해당 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장기적 사업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 제12조의2(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신설과 관련하여,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이는 국유재산 관리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특례 부여를 둘러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 개별법을 통해 특례를 규정할 경우, 국가 재산 관리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개별 수요에 따라 특례가 추가되어 국가 자산의 합리적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음.

따라서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정책적 검토나 공익적 판단을 통해 「국유재산특례제한

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 사용료나 대부료 등의 징수를 원칙으로 하며, 무상 사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리함.

특정 분야나 목적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별도의 개별법이 존재한다면, 그 개별법 규정이 해당 사안에 있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공유재산 관리의 공평성·형평성 및 재정 건전성 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후계농업인’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원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영농상속공제³⁾, 영농자녀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⁴⁾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역시 같은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하략>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은 각종 법률에서 분산 규정하던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동 법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특례 사항의 체계적인 재조정·단일화를 통해 과세 공평과 효율적 세수관리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개별법 차원으로 세제지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비과세·감면을 통합·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 개별법에서 조세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하여서만 조세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농촌 지도자 중심의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촌 여성 중심의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등 다른 농업인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